

농림부 2002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발표

농림부는 2002년도 농림부 가축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을 발표했다.

이중 닭 뉴캐슬병 근절대책을 발췌 소개한다.

닭 뉴캐슬병 근절사업

□근절 기본목표

- 1단계('01~'02) : 예방접종 강화로 발생의 최소화
 - 접종률 80% 도달시 살처분보상 제도의 단계적 도입
- 2단계('03~'04) : 발생 최소화 정착 및 예방접종 횟수 감축
 - 生毒백신 전환, 오리·메추리 등 사육 가금류 항원검사 및 예방접종 실시
- 3단계('05) : 차단방역 및 검사강화로 비발생국 전환
 - 철새 도래지 주변 농장 방역 등 예찰·감시 등 강화

□사업 추진개요

○방역 우선 순위 및 예방약 공급

- 예방접종(예방약 공급)
 - ①부화장→②육계농장(검용계)백세미)기타)→③산란계농장(중추)산란계)→④종계농장
- 예방접종 확인
 - ①도축장→②부화장→③중추농장→④육계농장→⑤기타농장
 - 주변농장 발생시 추가접종(육계의 경우 3차접종 등)에 소요되는 예방약은 농가자율에 따라 자부담으로 실시

○방역주체별 역할분담 추진

- 예방약 공급, 도축장 점검 및 혈청검사 등 : 정부 방역기관 중심 실시
- 농장 · 도축장 채혈, 소독, 교육홍보 등 : 민간방역단체 중심 실시

○유통단계별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및 도계시 예방접종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

- 1차 접종확인서는 부화장 영업자가 병아리 분양시 발급
- 2차 이후 접종확인서는 농장주가 닭 출하시 접종관리대장의 기록에 의거 발급
- 혈청검사는 육계는 닭도축장 중점, 기타 종계 · 산란계는 농장중점 실시(예방접종 여부 확인검사 결과에 따른 철저한 과태료 조치)
- 닭도축장 혈청검사 결과 항체가 없는 닭(기준 : HI역가 2미만) 출하농장을 방문, 접종여부 확인후 증빙자료(예방약 수분대장, 접종대장, 예방약 空瓶 등)가 없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

□닭도축장 등 혈청검사 추진 및 농장점검

○농장채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, 닭도축장 채혈은 해당업소 자체검사원이 실시하여 시·도 가축 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

- 채혈물량 : 연간 500천건
- 닭도축장 : 400천건(출하농가당 20수 이상)
- 농 장 : 100천건(산란계 농장별 10~20수, 연 3회 실시)

- 검사방법 : 출하농가 · 계군별 시료에 대해 HI와 ELISA 검사를 50:50 비율로 실시

○혈청검사는 가축위생시험소가 주관하되, 검사인력은 관할지역 닭 계열화업체(계열화업체가 없는 지역은 닭고기 수출업체 등 관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)에서 소속직원을 일정기간 파견 지원

○시장 · 군수는 농장 소독약 및 예방약 공급, 농장 실태조사 및 예방접종 확인점검에 민간방역 인력을 “방역보조원”으로 위촉 · 활용

- 위촉대상기관 : 수의사회(공 · 개업수의사)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(방역요원), 농협(공동방역사업단) 및 농림부장관이 가축전염병예방법,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축산단체

※ 닭뉴캐슬병 예방접종증명(확인)서가 없는 닭의 도축제한 등 적용은 “닭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(농림부고시)” 제정 후 시행계획